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26(화) 10:00

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641호

나. 제 출 자 : 장규권 의원

다. 제출일자 : 2024. 11. 12.

라. 회부일자 : 2024. 11. 12.

2. 제안이유

사회적 현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정착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의 체계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지원시설의 설치 · 운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협력체계의 구축 및 협의체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사. 홍보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5조, 제15조, 제20조 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4. 11. 15. ~ 11. 21.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본 개정안은 급속히 증가되는 1인 가구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해 의원발의 되었음

나. 주요 내용

1)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로 변경함.

2)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 1인가구의 용어 정의를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의를 적용하여 명확히 규정함

현행 조례	개정안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금천구 1인가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

4)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1인가구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함

5)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6) **협력체계의 구축 및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협의체 운영으로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근거를 마련함

7) **홍보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다. 검토의견

○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는 2017년 제정된 이후 개정된 내역이 없이 현행을 유지하여 왔으나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부응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에 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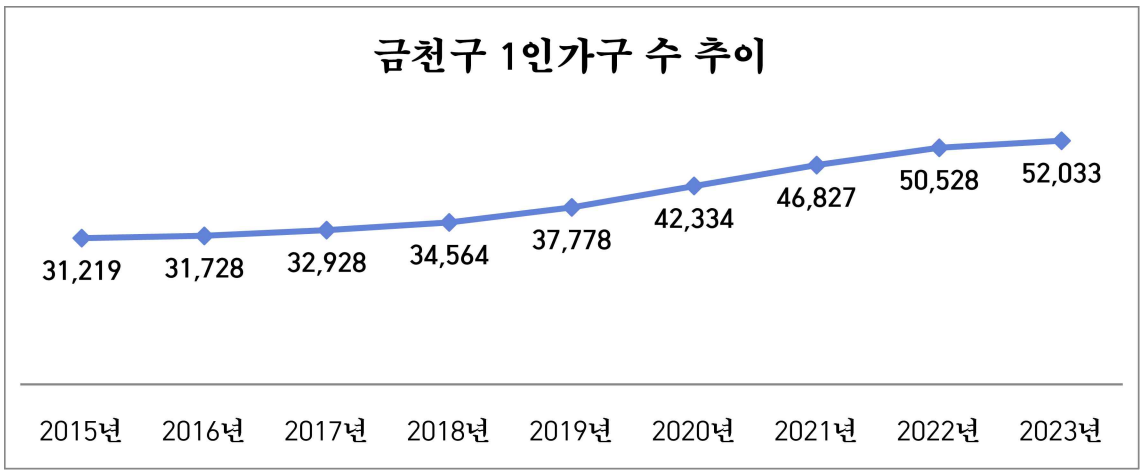

금천구 1인가구 수 추이

○ 본 개정안은 다각도의 정책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사항을 재정비하여 1인가구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17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 양육 · 보호 ·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 · 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

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 · 성별 · 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